

강릉시의회 공고 제2022-8호

「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내용 중 일부 사항이 변경되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재 공고합니다.

2022년 2월 18일

강릉시 의회의장

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, 지원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및 금액 규정(안 제8조제1항제1호)
- 나.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및 금액 규정(안 제8조제1항제2호)
- 다. 5·18민주유공자, 5.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(안 제9조)

3. 재입법예고 사유

제8조제1항제1호(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), 제8조제1항제2호(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)에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재입법예고하고자 함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보내실 곳:

- 주소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
- 전화: 033-640-4118
- 팩스: 033-640-4070

붙임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가목 중 “제8호”를 “제9호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제9조제1항제9호”를 “제9조제1항제10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제8호”를 “제9호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”을 “법 제4조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”로, “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”를 “해당하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5.18민주유공자, 5.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족 중 선순
위자 1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)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수당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(이하 “수당”이라 한다) 및 사망위로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1. 보훈명예수당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제9조제1항제1호부터 <u>제8호</u>까지의 사람: 월 15만원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<u>제9조제1항제9호</u>의 사람: 월 5만원</p> <p>2. 사망위로금: 제9조제1항제1호부터 <u>제8호</u>까지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20만원을 지급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제9조(수당의 지급대상 등)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<u>법 제4조의 국가유공자</u>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<u>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</u>로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8.·9. (생략)</p>	<p>제8조(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----- <u>제9호</u>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<u>제9조제1항제10호</u>----- -----</p> <p>2. ----- -- <u>제9호</u>----- ----- --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수당의 지급대상 등) ① ----- ----- <u>법 제4조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</u>로서 ----- ----- <u>해당하며</u>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5.18민주유공자, 5.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</u></p> <p>9.·10. (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)</p>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법규명:

성명(단체명) :

주 소 :

연 락 처 :

제·개정안 내용	의 견	비 고